

한국·일본의 만화표현의 자유 규제 연구

윤기현*, 김병수

초 록

무한한 상상력과 소재의 다양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만화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만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 덕목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맞닿아 있으나, 공권력과 사회적 압력, 그리고 자율규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표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만화표현의 규제에 관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문제점과 바람직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밝힌다.

주제어 : 만화, 표현의 자유, 만화표현의 규제

I. 서론

민주사회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가진다. 이는 민주국가의 핵심 권리이며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여 그 중요성을 인정 받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예술 활동으로서 만화의 창작표현은 무한한 상상력과 소재의 다양성을 기본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만화표현의 자유'에 관한 억압구조는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유·무형의 규제로 고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만화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로는 국가의 법률과 공권력의 규제와 사회적 규제, 그리고 자율규제(일본은 自主規制로 표현)가

있다.

공권력에 의해 법률로서 강제되는 규제는 한국의 경우, 크게 일제 강점기, 군부독재 정권의 정치적 탄압, 90년대 이후의 음란물 체제 등과 같은 체제와 사실상의 검열인 심의제도가 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전시체제하에서의 검열과 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외설죄로서의 규제, 그리고 지자체의 규제가 있어 왔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차이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국의 경우, 검열과 심의가 아직까지 엄존한다는 사실이며, 이에 더해 종교적, 유교적 엄숙주의와 분단체제로 인한 이념적 규제가 한층 더 심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모두 사회적 압력단체나 민간 기구에 의한 압력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출판사나 작가 개인의 자율규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만화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근대만화 이후의 만화규제에 대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II. 한국의 만화표현 규제

1. 법률적 규제

1909년 대한민보에 게재된 이도영의 신문만화로 출발한 한국의 만화는 초창기부터 일제강점기의 무단통치로 술한 탄압을 받아왔다. 이 시기 언론탄압과 궤를 같이 하며 주로 신문만화, 삽화를 중심으로 제재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군부독재정권 1960~1992년까지의 단계는 정치적 탄압과 '불량만화' '단속'이라는 두 가지의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90년대 이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성 표현을 억압하는 구조로 바뀌어 특히 97년 광범위한 예술장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만화에 가해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조항과 규제가 가능한 다음의 조항이 상대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¹⁾ 그러나 제21조 4항에서는

1) 제21조: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한계와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범조항의 적용여부가 표현규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로서의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과 청소년보호법²⁾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2000년 스포츠신문에 만화연재작가 10여명을 음란성을 문제 삼아 기소한 사건이다.³⁾ 더불어 창작물과 영상매체에는 심의 규정을 두는 실질적인 검열이 창작물에 대해 규제를 실시하는데,

를 가진다. 2.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1.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행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로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서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3) 그 외 스포츠신문사건: 불구속 기소 :서울신문사 편집국장 변우영,만화가 방학기(작품 "피와 꽃"),김지원씨, (작품 "미드 앤드 커피"), 소설가 안춘희(필명 안세희, 작품 "거인의 전설"),일간스포츠 편집국장 박영길,배운식(필명 강철수, 작품 "밤사쿠라"),김영석(작품 "새야 새야"),박봉성(작품 "신이 라 불리운 사나이"),스포츠조선 편집국장 이용호, 조성남(필명 조명훈, 김필화, 작품 "해적", "냉혈지대", "굿모닝 미스터 K), 이재석(작품 "해폭탄"),유만영(필명 유영, 스포츠서울 연재 작품 "아임소리"),조운학 ("마이터웨이"), 임동재("대침몰")가 약식기소

표현 한도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만들고 있다.

90년대까지의 규제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장르는 시사만화이다. 시사만화는 ‘정치적 평론’이라는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가장 빈번한 정치적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언론탄압과 함께 신문만화, 삽화는 무수한 탄압을 받았으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도 작가와 언론사에 대한 억압과 규제, 탄압이 이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58년 1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이른바 ‘고바우영감 경무대 똥통사건’이다. 당시 권력의 핵심부인 경무대에서 똥 푸는 사람조차도 권력을 누린다는 소재로 이승만 정부의 권력남용을 풍자했던 작가 김성환이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서울신문 윤영옥, 한국일보 안의섭 등이 직접적인 탄압을 받았다.

일반 만화에 대한 규제는 주로 청소년 보호와 음란물 규제라는 명분으로 실시되어 왔다. 음란물 규제의 근거는 헌법 제21조 제4항 제21조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실정법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이다.

현재 국내의 음란물 판단기준에 관한 국내의 학설과 판례는 ①사회통념에 따라야 하며 ②평균인(보통인)표준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③작품전체를 평가하는 전체적 고찰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법적 판단이어야 한다. ⑤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애매모호한 용어(보통인,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 성적 수치심)등으로 인해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음란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매체특성과 성표현물의 관련성에 대한 관념이 분명치 않다 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⁴⁾

한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간행물에 대하여 정식으로 법적 심의 권한을 부여⁵⁾받고 ‘청소년을 유해간행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불량간행물 추방’을 목적으로 ‘도서, 잡지, 만화, 전문신문, 전자출판물 등 제반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 하고 있다.

2. 사회적 규제

만화규제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주로 보수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32개 단체참여)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등이다. 건전보수, 도덕성회복 차원에서 시작된 이들의 만화에 대한 비판은 1990년부터 8년간 스포츠신문으로부터 시작해 만화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이들 단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윤실의 모든 활동은 ‘성 상품화’와 ‘전통적 윤리관의; 복원’이라는 두 가지 ‘대의’속에서 진행된다⁶⁾

4) 성동훈, 「표현의 자유 규제기준에 관한 연구-내용규제법률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12),153p

5) 2003.2.27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로 설치근거 이관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 3개 단체 공저,

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수적인 시민단체의 유무형의 압력도에 의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 설문결과 18.4%인 44명의 예술가들이 창작과 관련해 입건된 적이 있고 특정 종교나 우익단체, 구청, 안기부, 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을 받았다고 답했다.

3. 자율규제

한국에 있어서의 자율규제는 일본과 다른 양상을 띠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심의제도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므로 일본과 같은 출판사 등에 의한 자율규제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표1> 한국의 만화규제에 대한 연표

년도	내용
1958	동아일보 1월23일자 '고바우영감' 네 칸 만화 무대 관련 내용으로 작가 김성환 경벌금형
1970.1.21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 한국잡지윤리위원회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로 통합
1972	서울신문 6월19일자 '까투리여사' 새마을운동 비판으로 연재 중단 및 작가 퇴사
1979.12.28	<미성년자보호법>개정으로 '불량만화'를 미성년자에게 판매·대여 전면금지
1980.9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 <만화정화방안> 발표
1980.11.21	<사회정화위원회>, 불량만화출판·제작자 14명 구속, 만화가 등 69명 미성년자 보호법위반으로 고발조치 발표
1985	이은홍 작가 국가보안법

『97 정보통신검열백서』(1997.12), 4p

	이적표현물제작혐의로 구속
1986	1월19일자 한국일보 '두꺼비' 대통령 풍자내용으로 작가 안의섭 정보기고나 강제연행 고문, 1년 7개월 간 연재중단
1989.9.26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개편
1994	YWCA 법제정 토론회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1996.5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 스포츠 조선 불매운동
1996.11	<만화심의철폐를위한 범만화인결의대회>개최
1997.7.1	청소년보호법 제정·시행, 5일 문화체육부 산하<청소년보호위원회 발족>
1997.7.15	<청소년보호위원회>, 일본 음란, 폭력만화의 불법 복제 등 '불량만화' 1700여종 510만여 권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
1997.7	음대협 스포츠신문 음란 백서 발간
1997.8.2	스포츠신문 3사 편집국장과 만화가, 소설가 등 총 14명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및 약식기소
1999.7.1	청소년보호법, 1차 개정·시행
1999.8.27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불량만화'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위헌제청 결정
2000.7.18	'천국의 신화' 음란성 유죄판결
2000.9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판결에 항의하는 성명서발표
2001.8.25	청소년보호법, 2차 개정·시행
2002.2.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서울지법이 위헌 제청한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최종 위헌판결
2003.2.27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로 설치근거 이관
2004	문화일보 신문만평 4회 (10월 5일, 7일, 18일, 29일)에 걸쳐 누락

참조: 1. 2003.10.2, 2003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세계의 만화표현 규제사[史]와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제6회 부천만화축제 2003 만화산업진흥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2. 강금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1998년 발간 대한변협 1997년도 인권보고서 3.

Ⅲ. 일본의 만화표현 규제

1. 법률적 규제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과 폭력의 표현이 자유로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대로 일본의 자율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한국만큼 억압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률적 제재 기준은 주로 외설죄에 관련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1957년 채털리사건⁷⁾의 최고재판소 판결과 1980년 <사조반라의 도배(四疊半襖の下張)> 사건⁸⁾ 판결이다. 이들 판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례로 일본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나타난 음란물 기준을 보면 채털리부인 사건의 경우, 오로지 성욕을 자극, 흥분시킬 것, 그리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할 것,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것으로 규정⁹⁾했다. 1980년 <四疊半의 도배>사건에서는

외설 판단기준이 ‘성에 관한 묘사서술이 있고 노골·상세할 것, 위의 묘사서술이 문서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 이상의 2가지 점을 기초로 문서전체가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에 중점을 둔 것’¹⁰⁾ 등을 제시했다. 최근의 가장 이슈가 된 만화에 대한 사건은 2002년 뷰티헤어(ビューティヘア)의 <밀실>(蜜室)과 관련된 이른바 ‘쇼분칸(松文館)재판’이다. 이 사건은 2002년 10월 쇼분칸의 성인만화의 외설성을 둘러싼 재판으로 쇼분칸 사장과 편집국장, 만화가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결과, 원심 동경지방법재판소 형사2부는 항소심 동경고등재판소, 상고심 최고재판소를 거쳐 외설죄가 확정되었다. ¹¹⁾



<그림1> 쇼분칸의 ‘밀실’ 책표지

적용된 법률은 형법 제175조(외설물 분포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며, 검찰의 논리는 표현이 상세하고 생식기 범위의 40%에 해당하는 면적을 검게

7) D. H. Lawrence의 『채털리부인의 연인』의 번역자 이토우세이(伊藤藤)와 출판사사장이 형법 제175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제1심에서 출판사사장 유죄, 번역자 작가 무죄였으나 2심에서 두 명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1953년 일본헌법 제21조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검열의 금지, 통신 비밀에 대한 규정과 표현의 자유에 반하느냐의 문제를 남김
8) 1980년 월간지 『面白半分』에 소설가 나가이카후(永井 荷風)의 작품 『四疊半襖の下張』이 게재된 것이 외설죄로 문 제되어 사장과 편집장이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외설죄’에 관한 ‘채털리 사건’을 재구축한 사건.
9) 박용상, 「표현의 자유와 음란규제 및 청소년보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3,67p

10) 박용상, 앞의 글, 69-70pp
11) 2004년 1월, 동경지방법재판소형사2부는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판결, 2005년 6월 항소심에서 동경고등재판소에서는 외설성은 인정되나 만화의 외설성은 실사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징역형은 과중하다는 판결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엔에 처했다. 피고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2007년 6월14일 최고재판소에서 2심판결의 외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털리사건」 판례를 통해 헌법의 의한 표현자의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2심이 확정되었다

칠하는 자율규제가 성인만화 속에서 일반적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일본에서도 ‘정상’, ‘선량’이란 단어가 일반적 사회 기준의 양식과 통념에 따른 판단기준에 적합 하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한편으론 이번 판결은 만화는 사진, 비디오 보다 외설성이 매우 적다는 것, 성인 마크를 넣어 지정했음에도 무죄판결의 요소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이유로 성적 미디어를 규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청소년 조례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형법 제175조 외설도서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화에 대한 공권력의 표현의 자유 침해, 작품으로서의 밀실은 성기표현은 필연적이다 라는 의견¹²⁾을 제시했다.

2. 사회적 규제

일본도 시민단체나 사회적 윤리규범에 반하는 만화에 대한 유무형의 규제는 꾸준히 있어왔다. 일본은 자율규제 등을 통해 검열제도는 없지만 사실상의 검열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

시민사회에서 어디까지 용인하느냐의 문제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법적규제로 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은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현상이다. 일본사회에서 사회적 규제로 인한 논쟁은 50년대 악서추방운동과 90년대의 이른바 ‘유해만화’ 논쟁이

다. 악서추방운동은 1955년 <일본 어린이를 지키는 모임>, <어머니회연합회>, <PTA(부모와 교사의 회의)>등에 의해 처음 제기된 후, <도서선정제도>, <청소년보호육성법안> 등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의 만화규제와 출판사 등에 의한 자율규제까지 많은 영향을 끼쳐 1963년 출판계의 자율규제단체 <출판윤리협회> 결성과 1964년 도쿄도의회에서 <청소년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나가이고(永井豪)에 의해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주간소년점프(週刊少年ジャンプ)에 연재된 작품인 <과립치학원(ハレンチ学園)>이 소년만화로서 과격한 성과 폭력수위로 미디어와 PTA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유해만화 논쟁은 1989년 연속여아 유괴살인사건의 범인이 만화, 애니메이션 팬이라는 보도로 불붙기 시작해 번진 소동이다. 1990년 아사히신문에서 아동만화가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게재한 후 와카야마(和歌山) <만화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모임>(コミック本から子どもを守る會)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찬동해 전국 각지의 PTA가 동조함으로써 <드래곤볼>, <북두의 권>등까지 폭력표현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 일본 만화의 신이라 추앙받는 테즈카 오사무(手塚治虫)까지 <흑인차별을 없애는 모임>에서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80년대 성인물의 성적묘사에 관한 비판도 가세해 자율규제도 강화되어 출판사들은 <출판문제 간담회>(出版問題懇話會)를 조직해 자율적인 규제를 시작했으며, 지자체와 정부도 이에 동조했다. 1991년 도쿄도의회가 유해도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青少年の健全な育成に關する條例)를 강화하기도 했다.

12)

<http://www.michishuppan.com/publication/nonfiction/4-86086-011-X.html>

특히 도쿄도의회와 관련 조례는 1964년 실시 이래 1999년 2월말까지 모두 3233권을 불건전도서로 지정하기도 했다.¹³⁾ 국회에서는 자민당에서 <어린이 대상 포르노만화대책의원모임>(子供向けポルノコミック等対策議員懇話會)이 출판사의 자율규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3. 자율규제

90년대의 유해만화 소동으로 이후 업계의 자율규제가 발 빠르게 진행되었다. 만화출판사들은 자율규제를 선언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만화에 스스로 ‘성인만화’ 지정표시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으며, 동인지인쇄업조합이 2007년 7월, 동인지의 성표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¹⁴⁾하기도 했다.

출판사의 ‘가이드라인’이 성의 묘사 수준을 설정하고 지자체의 조례가 만화상품의 유통망을 규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천황제나 장애인묘사 등이 터부시되는 것도 작가와 출판사의 자율규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현석(2006)은 만화가 서브컬처로서의 인식이 강하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자본이 사적 이슈나 소수자 등의 마이너리티 문제, 그리고 사회병리를 걸러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⁵⁾

13) 정현숙, 『일본만화의 사회학: 만화사적 접근을 통해 본 경쟁력의 기반』, 문학과 지성사, 2004, 299p

14) 선정우 블로그, <http://blog.daum.net/mirugi/4053656>

15) 이현석, 「일본은 과연 만화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천국인가-일본만화의 검열에 대하여」, 『만화규장각매거진』.vol137.2006.3

이밖에도 1997년 고베(神戸) 아동 연쇄 살인사건, 1998년 와카야마(和歌山) 카레 독극물사건, 2001년 미국 동시다발 테러사건, 2003년 나가사키(長崎) 유아 연속 유괴 살인사건, 2007년 교토(京都) 부친살해사건 등 대형사건이 있을 때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자율규제가 실시되기도 했다.

<표2> 일본의 만화규제에 대한 연표

년도	규제 내용
1938	전쟁언론통제의 일환으로 내무성<아동출판물에 관한 지도요강>에 의해 만화포함 아동도서 33점이 발매금지 처분
1955	<일본 어린이를 지키는 모임>, <어머니회연합회>, <PTA>에 의한 악서추방운동
1963	출판계 자율규제단체<출판윤리협회>결성
1964	도쿄도, 청소년조례 제정
1970	<ハレンチ學園괴담치학원>(나가이고)비난 여론, <アシュラ아슈라>(조지 아키야마)일부발매 금지, <아폴로의 노래アポロの歌>(테스카 오사무) 성표현 문제로 후쿠오카에서 발매금지 등
1976	<국제여성의 해를 계기로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이 만화 <イヤハヤ南友>작품에 대해 여성문제 비난
1976~1980	41개 지자체에서 청소년조례강화
1978.11	<만화 에로제니카>(漫畫エロジェニカ) 형법175조 외설죄로 적발
1979.2	<별책 유택피아/육의 유택 別冊ユートピア/唇の誘惑> 형법175조 외설죄로 적발
1989.7	<흑인차별을 없애는 모임>항의로 <오바케의 Q타로>(オバケのQ太郎) (후지코 후니오)단행본 출간 중지
1989.8.10	연속 여아유괴살인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유해성 사회문제화
	- 총무청, <출판윤리협회>에 대해

1990.9.4	만화자유규제요청 - <만화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모임>, <와카야마 현 타나베 시 주부들에 의해 결성. 서명운동, 진정서 제출. 이후 전국의 <부모회>, <PTA> 항의운동 계속
1990.10	<출판윤리협의회>, 회원사 자율규제 요청. 성인도서출판사를 중심으로 한 <출판문제간담회(현 출판윤리간담회)>가 편집윤리강령, 편집윤리규정 채택, 자율규제 실시
1991.1	<출판윤리협의회>, 성인 마크제도 발표
1991.2	경시청, <외설도서판매목적소지> 용의로 도내만화전문점 적발, 성인물동인지대상으로 서점점장, 발행인, 작가 등 74명 검거
1991.7	도쿄도의회, <불건전(유해)도서류의 규제에 관한 결의> 채택. 행정지도 강화와 청소년건전육성 조례의 개정 요구
1991.10	출판노련, 만화규제와 청소년 조례개악반대결의
1991.12	일본 펜클럽 만화규제 반대 성명
1992.3	만화가, 편집자, 서점주의 <만화표현의 자유를 키지는 모임> 결성. 이모임 발기인인 야마모토나오키(山本直樹)의 <Blue> 의 도 조례로 불건전지정으로 출판사 파기 결정
1995.3.20	움진리교의 지하철 사린사건이 만화·애니메이션에서 착상했다는 지적에 다시 유해만화범죄 유발론 확산
1997	자민, 사민당, 사키카케여당 등 3당에 의해 <여당아동매춘문제프로젝트팀> 발족. 청소년조례에 의한 <불건전> 도서지정과 함께 편의점 자율규제 강화. 일본 성인만화 대형편의점 체인에서 철거 <고배 연속아동살상사건>의 범인이 만화의영향이라는 보도 이후 사회문제화
1999.11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시행.
2000.5	참의원 자민당이 <청소년유해환경대책법안> 발표
2001.10	도쿄도의회, 자살의 장려, 방조 첨가, 서점에서 진열구분의 의무에 관한 조례 발표.
2001.11	- 자민당, <청소년사회환경대책기본법안> 발표 - 연락망AMI 발족

2002.6	만화관계자들의 최초의 정치운동인 <아동보호의 이름을 빌린 창작물 규제에 반대하는 청원서명> 운동 시작
2002.9	만화단행본 최초로 <밀실(密室)> (쇼분칸)이 형법 175조 외설죄로 적발. 쇼분칸 관계자와 작가 체포

참조: 1. 연락망 AMI 웹사이트
2. <http://picnic.to/~ami/kisei/ryakushi.htm>

Ⅲ. 만화창작 표현의 규제에 관한 문제점

1. 법적 규제의 모순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법적 구속력으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른바 ‘만화의 음란성’에 대한 규제이다. 이와 관련되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천국의 신화’ 사건이다. ‘천국의 신화’는 우리나라 상고사로부터 시작하여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100권짜리 대작으로 기획된 이현세 화백의 야심작이었다. 당초 성인용으로 기획출판된 만화가 청소년보호법의 잣대로 1997년 기소되면서 만화계는 물론 문화 예술, 사회 전반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엄청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림2> 이현세 작 '천국의 신화' 책표지

이후 6년간의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오간 끝에 200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만화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대폭 확대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후 창작의지가 꺾인 이현세 화백은 결국 '천국의 신화'를 마무리 시키지 못하고 미완의 대작으로 남겨두고 말았다. 무모한 법률적 규제가 문화의 싹을 자르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음란성에 대한 규제는 단순한 외설에 대한 사회적 용인의 한계가 아니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이동연(2002)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제제를 가하려는 입장들은 과거 정치적 보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관행과는 달리 성적 보수주의, 종교주의, 군사주의, 가부장주의 이데올로기를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적인 무지를 떠나서 그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자신들의 이념과 윤리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전근대적 지배집단의 공포심과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성적 표현물이 청소년들을 망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급속도로 해체되어 자신들의 반공이념과 기득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들의 도전이 갈수록 거세져 남성사회 체제를 혼란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등

이 문화적 표현물들을 단순히 허구 물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¹⁶⁾

직접적인 사례로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1997년 재야단체인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회원지 <서울청년> 8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고시한 사건이다. 이는 사전심의가 정치적 검열 장치로의 전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런 규제는 작가 자기검열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민예총과 문화연대의 조사¹⁷⁾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35.5%가 법제도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기작품에 대해 검열을 한다고 답했으며, 창작할 때 '영향을 받거나 고려하는 법령'은 국가보안법(응답자의 63%), 청소년보호법(15.1%),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7.7%, 음비계법)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민예총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영상물이나 간행물 등에 대해 등급부여와 같은 '성'과 '폭력'에 의한 규제보다도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1차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음란성 자체에 대한 규제의 모순도 지적되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90년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한 이는 강금실이다. 그는 만화에 대한 탄압을 분석하면서 첫째, 당시 일진회와 빨간마후라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정부의 합동단속과 일본만화의 악영향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된 것 등의 시기적 문제와 둘째, 이른바 '청소년 유해론'이지만 이는 청소년보호법과 구체적 개념이 없고

16) 이동연, 『대중문화연구와문화비평』, 문화과학사, 2002, 211p

17) 한국민족예술인연합이 화가와 시인, 소설가와 영화감독, 만화가와 사진작가 등 예술인 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2001.8.20~9.3.8개 분야 47개 항목, 15일간 조사. 출처: 『오마이뉴스』. 2001. 9. 8

대법원 판례 상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진 추상적이고 자의적 법집행의 우려가 있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을 기준으로 성인용을 단속하는 모순된 사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¹⁸⁾

일본 또한 ‘음란성’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시민단체의 지적과 정부, 여당의 규제와 지자체의 규제 시스템은 ‘사회적 제어장치’로서 기성 제도권의 정치적 이념을 강고하게하고 나아가 도덕적인 물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일본의 의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청소년유해사회환경대책기본법(青少年有害社會環境對策基本法案, 이하 청환법)과동이다. 청환법은 일본사회의 급격한 정보화 진전과 과도한 상업적 풍조로 말미암아 청소년 유해환경의 폐해가 확장되고 심각하다라는 인식하에 1999년 처음 제기되어 2002년 법안 제출 전 사회적 비판여론에 폐기된 법률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옹호법과 함께 3대 미디어규제법으로 불린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와 작가 등은 ‘소년범죄 급증에 대한 근거가 없고 불황에 따른 범죄 증가나 사회적 혼란에 대해 모든 책임을 미디어에 전가하며 나아가 우익역사관을 주입하려는 목적이 숨어있다’¹⁹⁾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이른바 ‘천황제’ 등의 암묵적 규제가 만화창작의 억압기제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8) 강금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대한변협 1997년도 인권보고서』, 1998

19) 아동포르노법개악저지청환법분쇄실행위원회 <http://www.geocities.co.jp/AnimeComic-Tone/9018/>

2. 창작의 표현 규제에 모순과 반발

1) 한국

1996년 11월 한국의 작가와 문화단체는 연합체를 구성해 여의도에서 만화인 최초의 시위를 개최하며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이들은 성명서에서 “만화의 재미와 즐거움은 작가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상상력에 달려 있으므로 만화 등 대중문화 및 대중매체와는 직접적이고 단선적인 관계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성 문제나 폭력 장면이 만화를 무조건 음란하다는 등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폭력적인 논리라고 주장”하며 “연재만화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인식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이 각종 상업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법으로 기능해왔고, 모호한 범조문과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인하여 문화매체 대해 과도한 검열을 해왔다”라는 지적하고 “유해매체에 대한 심의기준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무시하는 항목들이 많으며, 특히 시행령에 있어 개별심의 기준들 역시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가치관에 기반을 두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문화위원회가 전문가가 없고 정보위의 보호 활동이 결국 통제와 규제활동으로 집중될 여지가 많으며, 또 하나의 검열기관으로 굳어질 것

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회청원운동과 언론홍보, 대체입법화, 표현의 자유 네티즌서명을 주도했다.²⁰⁾ 만화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11월 3일을 만화의 날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기념식을 치러오고 있다.

2) 일본

5,60년대 악서추방운동에 대응해 1955년 출판사와 만화가들은 칠일회(七日會), 도쿄아동만화회(東京兒童漫畫會)를 발족시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소녀 잡지 10개회사는 <불량만화를 없애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²¹⁾ 또한 90년대 만화에 대한 유해매체 탄압은 작가와 시민들의 반발을 불렀는데, 이 시기에 결성된 대표적인 단체가 1992년 만화가, 편집자, 서점대표 등으로 구성된 <만화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모임>(コミック表現の自由を守る會)이다. 또한 199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유해만화소동과 관련, 이에 반해 표현의 자유와 법률에 의한 창작표현규제를 반대하는 <‘유해만화’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후에 아동만화방위동맹(マンガ防衛同盟)으로 개칭)결성되었고 후에 비정부조직 NG-O-AMI(Animation, Manga, Interactive-game)이 2001년 결성)으로 승계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1999년 성립된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아동매춘, 아동포르노 등에 관한 행위에 관한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현실성이 없다는 어린이 성 학대, 어린이 포르노 반대 시민단체인 ECPAT²²⁾ 제편 간사이(エ

クパット・ジャパン)와 함께 요구해 수정을 요구해 관철시켰으며, 2002년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옹호법, 청소년유해사회환경대책기본법이라는 이른바 ‘미디어규제3법’에 대해 반대활동을 개시하기도 했다. 또한 2004년 도쿄도의 청소년보호육성 조례 개정과 관련, 불건전 도서 개별지정을 폐지하고 포괄지정을 도입하는 안에 대한 반대서명운동, 2007년 제21회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에 각 당 후보자에게 양케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시적으로 활발한 반대운동을 벌인 아동포르노법개정저지청환법분쇄실행위위원회와 창작물의 규제/단순소지규제에 반대하는 청원서명시민유지²³⁾단체가 현재에도 각종 규제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IV. 결론

미국에서도 만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1954년 미국만화잡지조합이 자율규제인 만화표현규제윤리강령, 그리고 심의기관인 만화심의기구(Comics Code Authority)가 만들어져 결국 미국만화시장이 정체되는 결과를 가져온 바 있다²⁴⁾. 이는 규제가 법이든 자율규제든 대부분의 통제와 간섭이 만화시장 성장을 막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예이다.

따라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만화창작 표현에 대한 법적, 사회적 규제는 모호한

20)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 운동과 문화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문화예술시민사회 단체 공동위 2000. 7. 31

21) 정현숙, 앞의 글, p288

22)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23) <http://www.savemanga.com>

24) 정현숙, 앞의 책, pp306-307

법조문과 포괄적 시행령으로 인한 포괄적이고 모호한 법조문 해석과 자의적 판단, 그리고 기성세대의 보수적 가치관의 의한 개별적 심의가 가장 큰 모순점으로 드러난 데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덕목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현실적인 ‘정치적 행위’, 또는 관습적 체재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행정당국이 만화를 문화콘텐츠와 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쟁적인 지원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낡은 규제의 틀과 창작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명제를 존중하는 것이 만화가 중요 콘텐츠산업으로서도 성공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심의제도 철폐나 일본의 자율규제 완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은 결국, 공동의 의식을 공유한 문화단체와 연대한 만화가와 만화단체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역사적으로도 ‘창작표현의 자유’는 위로부터의 수혜가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시민과 연대한 투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미림, 『서사만화개론』, 범우사, 1999.
- 이동연,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 문화과학사, 2002
- 정현숙, 『일본만화의 사회학: 만화사적 접근을 통해 본 경쟁력의 기반』, 문학과 지성사, 2004
- 성동훈, 표현의 자유 규제기준에 관한 연구-내용규제법률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 박용상, 「표현의 자유와 음란규제 및 청소년보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3.
- 강금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대한변협 1997년도 인권보고서』, 1998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 3개 단체 공저, 『'97 정보통신검열백서』
- 선정우, 「2003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세계의 만화표현 규제사[史]와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제6회 부천만화축제 2003 만화산업진흥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 위키피디아 일본 <http://ja.wikipedia.org>

ABSTRACT

A Study on Freedom Constraints of Comics Expression of Korea & Japan

Yoon, Ki-Heon*, Kim, Byoung-Soo

The infinite imagination and variety of material,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fundamental elements of the comics. However, although the freedom of comics expression is linked with the liberty of speech and press, it's expression is constrained by a public authority and social pressure, self-regulation. This paper explains some problems and desirable freedom of expression thought researches on constraints of comics expression of Korea and Japan.

Key Word : Comics, freedom of expression, Constraints of comics expression

윤기현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Tel : 051-510-1736

toon@pusan.ac.kr

김병수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초빙객원교수

(609-735)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Tel : 062-236-7802

gagcomic@hanmail.net